

# 고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의안번호 제2981호)

## 심 사 보 고 서

### 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5. 8. 22.

최두임 의원 등 5인

나. 회 부 일 자 : 2025. 8. 29.

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 : 2025. 9. 10.

기획행정위원회 상정·원안가결

### 2. 제안설명의 요지(설명자: 최두임 의원)

#### 가. 제안이유

○ 「고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」의 일부 자구 표현의 혼용과 조문 간 미비점 보완을 통해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 「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에 따라 고성군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행사, 공모전 개최, 기부자 예우 및 포상의 근거 조항 등 사무의 위탁 근거를 마련하여 고향사랑 기부 문화 확산을 도모하고자 함.

#### 나. 주요내용

- 1) 일부 자구 표현의 혼용과 조문 간 미비점 보완(안 제1조, 안 제3조의2, 안 제4조제1항제1호, 안 제5조, 안 제15조제1항, 안 제18조제1항, 안 제18조의2, 안 제20조)
- 2)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행사, 공모전 등 시행 근거 신설(안 제20조)
- 3) 군 누리집 등에 기부자 명단 공표 등 기부자 예우 근거 신설(안 제21조)
- 4) 전문성을 갖춘 기관 등에 사무 위탁 근거 신설(안 제22조)
- 5) 고향사랑기부활성화 공로자에 대한 포상 근거 신설(안 제23조)

## 다. 참고사항

### 1) 관계법령

- 「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」

### 2) 예산조치: 해당사항 없음

### 3) 입법예고: 고성군의회 공고 제2025-40호

- 예고기간: 2025. 8. 22.(금) ~ 8. 28.(목)[6일간]
- 의견반영 등 조치 내용: 의견 없음

## 3. 전문위원 검토요지(전문위원: 허수은)

- 본 개정조례안은 일부 자구 표현 등 보완과 「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」 개정에 따라 현행 고성군 고향사랑기부제의 운영상 미비점들을 개선하여 기부제 활성화 및 실효성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.

### ○ 개정 취지(적정성/타당성)

- 「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제정한 조례에 기금관리·운용, 사무위탁, 제도 활성화 등의 안을 신설하고 조문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

### ○ 조례안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(개정 조례안 참고)

- (안 제1조, 안 제3조의2, 안 제4조제1항제1호, 안 제5조, 안 제15조제1항, 안 제18조제1항, 안 제18조의2, 안 제20조) 일부 자구 표현의 혼돈과 조문 간 미비점 보완
- (안 제20조)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교육, 행사, 공모전, 지역교류 등 시행 근거 신설
- (안 제21조) 군 누리집 등 기부자 명단 공표, 감사 서한 발송, 군 행사 초청 등 기부자 예우 근거 신설
- (안 제22조) 기금 사업 및 활성화 사업 등 관련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신설
- (안 제23조) 고향사랑기부 활성화 공로자 포상 근거 마련

○ 본 개정조례안은 고향사랑기부제도 활성화를 위한 관련 행사, 공모전 등 시행 근거를 신설하고, 기부자의 기부에 대한 자긍심 고취와 예우 등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및 홍보사업의 위탁 근거, 공로자 포상 근거 등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어려운 지방재정을 보완하여 주민 복리 증진 사업 재원 마련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지역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(위원회 회의록 기재)

5. 토 론: 없음

6. 심사결과: 2025. 9. 10.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